

남 동 구
구보는 공무원으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793호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공 고

- 공 고 제 1069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식 품 위 생 과 2
- 공 고 제 1072 호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기 획 예 산 과 4
- 공 고 제 1073 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운연동 중로 3-69호선 도로개설 공사] 도 로 과 148

고 시

- 고 시 제 63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150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3-1069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3. 6. 9.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3. 5. 26. ~ 2023. 6. 9.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 반 음식점	1996- 0199008	솔나무집	이**	남동구 논현고잔로 32, 1층일부(고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12-31	2023-06-09
일 반 음식점	1998- 0199301	밥사랑 면사랑	김**	남동구 만수로100번길 3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8-30	2023-06-09
일 반 음식점	2001- 0199745	육개장 차차차	문**	남동구 만수로 86-1(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5-06	2023-06-09
일 반 음식점	2020- 0203207	아지트 퓨전호프	유**	남동구 남촌동로 26, 1층일부(남촌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9-21	2023-06-09
일 반 음식점	2020- 0202307	해월까르페	최**	남동구 앵고개로 973, 1층, 2층(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5-02	2023-06-09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3. 6. 8.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1

2023. 5. 26.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072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과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전 총 괄 과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관 광 과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관 광 과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관 광 과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 성 가 족 과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아 동 복 지 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 육 정 책 과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 동 주 택 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공 통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공 통

2023. 5. 26.

남 동 구 청 장

- 1) 화장실, 수유실 등
2) 화장실, 수유실 등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7.(수) ~ 6. 21.(수)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총무과)
-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아동복지과)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과)

【 총 무 위 원 회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70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 개정(2023.6.28. 시행)으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 「민법」 제15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의 개정)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면)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 률 지 원 요 청 내 역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부모빋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				

[별표 3]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26조제1항 관련)**I. 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기준	지급액	비 고
현수막	일반형	1면	1,000원	
	족자, 깃발형 현수막	1면	500원	
벽 보 . 전 단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	A4용지 초과	100매	3,000원	
	A4용지 이하	100매	2,000원	

II.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남동구 전지역
2. 수거보상 신청자격 : 남동구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주민 및 등록단체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

수 거 보 상 대 상	제 외 대 상
•우리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 (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휨스 등) 에 걸린 불법 현수막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건물벽면 포함)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 (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	•구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행정용·선거용 그 밖에 협의된 광고물 •형태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아파트단지 및 현관내부 부착광고물 •신문지 전단지 •타 구지역 배포 광고물

4. 보상금 신청

가. 신청기간 : 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각동 주민센터

다. 지 참 물 : 신분증, 통장사본, 사진자료(현수막의 경우에 한함), 수거광고물

5. 보상금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 은행계좌로 지급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 4. (생략)	제2조(정의) ----- ----- 1. “청년”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2조(「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일 또는 추천일 기준 <u>만 18세</u>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u>18세</u>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2조(지원대상자) ----- ----- ----- ----- -.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남동구 지역가입자로서 법 제69조제5항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이고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1. ----- ----- ----- ----- ----- ----- ----- 65세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65세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지원대상) 경로당 주치의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만6 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 65세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단순한 자구수정으로 소요 비용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 기 동

[참고자료]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71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사항을 정비·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기금의 운용·관리 정비 : (안 제3조 ~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요건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맞게 개정 : (안 제10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을 “수입”으로,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안정적이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를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의 출납과 보관은 구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하되,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의무예치금액”을 말한다)은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제15호 중 “퇴거명령(이하 “대피명령 등”이라 한다)”을 “퇴거명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이 대피명령 등으로 인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지원할 때에”를 “제6조제15호에 따른 이주지원비”로, “실비

만”을 “실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을 “제6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직 위원 :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 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 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 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남동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 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안정적이고 이자율 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 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 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 수입----- ----- ----- -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시행령」----- ---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 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 ----- ----- ----- ----- ----- ----- ----- -----

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남동구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

-----.

② 기금의 출납과 보관은 구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하되,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의무예치금액”을 말한다)은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용·관리) ①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략)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6. , 17. (생략)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이 대피명령 등으로 인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지원할 때에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만 지원한다.

②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임차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14. (현행과 같음)
15. -----

퇴거명령-----

16. , 17.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 제15호에 따른 이주지원비-----
----- 실비를 -----.

② 제6조제15호에 따른 -----

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 ⑦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 ⑦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72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타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사항 반영 및 기타 맞춤법 사항 변경
(안 제12조제2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15조제2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10일에서 20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제2호)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을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최민영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73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법정동간 경계 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 마련 및 주민의 생활권 일치 기여

☐ 주요내용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석동 141의28-30, 142-146번지 및 간석동 131의2 일부(도로), 141의1 일부(도로), 141의2 일부(도로)를 구월동으로 편입함에 따라 관련 별표의 구역 현황 수정
 - 법정동(간석동→구월동) 변경
- 관할구역 제외 및 포함에 대한 문구 통일
 - 관할구역 제외 : (---) 안에서 작성 / OO동으로 편입된 OO동
 - 관할구역 포함 : 별도 독립 문구 / OO동에서 편입한 OO동
- 관할구역 전반의 표기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표기방식 정리
 - 연속적인 번지 표기 : 000-000
 - 번지에 대한 세부적인 호 표기 : 00의00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조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구월동	구월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구월동 628의4, 628의13, 629의2, 1068의2번지, 간석동으로 편입된 구월동 71의51, 71의53, 71의55, 71의57, 72의1, 75의29, 72의31, 72의34, 72의36, 72의38, 72의41, 72의43-47, 72의49-55번지 제외) 수산동에서 편입한 수산동 185의38-40, 185의42, 191의4, 192의2, 193, 194의1, 597의37번지 포함 간석초교다복마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원(간석동에서 편입한 간석동 131의2 일부, 141의1 일부, 141의2 일부, 141의28-30, 142-146번지 포함)
	간석동	간석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간석동 산37의20, 산38의5, 225의23, 225의88, 225의254-256, 225의279번지, 구월동으로 편입된 간석동 131의2 일부, 141의1 일부, 141의2 일부, 141의28-30, 142-146번지 제외) 구월동에서 편입한 구월동 71의51, 71의53, 71의55, 71의57, 72의1, 75의29, 72의31, 72의34, 72의36, 72의38, 72의41, 72의43-47, 72의49-55번지 포함
	만수동	만수동 일원(서창동으로 편입된 만수동 산87의1, 산88의1, 산89의 3-6, 산91의 3-4, 산99의 1-2, 산100의5, 산111의3-4, 708의3, 709의3-4, 710의1-3, 710의 5-8, 710의10, 711의1, 711의4, 712-713, 714의1-2, 715의1-2, 716의1-2, 717, 717의1-9, 718의1-4, 719, 719의1-5, 720-728, 729의1-2, 730, 730의1, 731-732, 733의1-2, 734-736, 737의1, 738의1, 739의2, 815, 816의1, 816의3, 817의1, 818의1번지 제외) 구월동에서 편입한 구월동 628의4, 628의13, 629의2, 1068의2번지 포함 수산동에서 편입한 수산동 1의1, 1의3, 1의8-9, 1의11, 1의14, 1의19-20, 1의 22-27, 2의2-3, 2의5-7, 2의21, 2의45, 2의47-48, 2의51-59, 595의5-8, 595의16, 595의29번지 포함 간석동에서 편입한 간석동 산37의20, 산38의5, 225의23, 225의88, 225의254-256, 225의279번지 포함 장수동에서 편입한 장수동 681, 681의1, 681의3, 682의1-2, 682의4-8, 682의 11-12, 684, 684의4, 684의8-9, 685의1, 685의5-7, 686-687, 688의2, 688의4, 688의9, 689의4, 689의6, 689의13, 690의3, 698의3, 698의11, 699의1, 699의6, 700의1, 700의4-5, 701-708, 710, 710의3, 712-714, 761, 761의1, 762번지 포함
	장수동	장수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장수동 681, 681의1, 681의3, 682의1-2, 682의 4-8, 682의11-12, 684, 684의4, 684의8-9, 685의1, 685의5-7, 686-687, 688의2, 688의4, 688의9, 689의4, 689의6, 689의13, 690의3, 698의3, 698의11, 699의1, 699의6, 700의1, 700의4-5, 701-708, 710, 710의3, 712-714, 761, 761의1, 762번지 제외)
	서창동	서창동 일원 만수동에서 편입한 만수동 산87의1, 산88의1, 산89의 3-6, 산91의 3-4, 산99의 1-2, 산100의5, 산111의3-4, 708의3, 709의3-4, 710의1-3, 710의5-8, 710의10, 711의1, 711의4, 712-713, 714의1-2, 715의1-2, 716의1-2, 717, 717의1-9, 718의1-4, 719, 719의1-5, 720-728, 729의1-2, 730, 730의1, 731-732, 733의1-2, 734-736, 737의1, 738의1, 739의2, 815, 816의1, 816의3, 817의1, 818의1번지 포함 운연동에서 편입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포함 논현동에서 편입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포함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운연동 운연동 일원(서창동으로 편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
	도림동 도림동 일원(남촌동으로 편입된 도림동 산103의1-2, 산104, 584의31, 584의37, 584의63-70, 594의24-33, 594의35, 594의37-43, 594의52-57, 594의59-66, 594의68-78, 596의3, 617의1, 620-623, 624의1-14, 625의1-42, 626의1-44, 627의1-3번지, 논현동으로 편입된 도림동 산93의3, 산94의3, 산96의2-3, 산97의2-4, 산98, 산100, 산100의1-5, 산102, 산102의1-5, 산103의3, 498의4, 584의97-98, 594의20-23, 594의34, 594의36, 594의44-46, 594의48, 594의50-51, 594의79-80, 594의87-91, 595, 596의1-2, 597의3-5, 600의1, 601-607, 607의1-2, 620의1-2, 621의2, 626의9, 626의45-50, 627의28번지 제외)
	수산동 수산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수산동 1의1, 1의3, 1의8-9, 1의11, 1의14, 1의19-20, 1의22-27, 2의2-3, 2의5-7, 2의21, 2의45, 2의47-48, 2의51-59, 595의5-8, 595의16, 595의29번지, 구월동으로 편입된 수산동 185의38-40, 185의42, 191의4, 192의2 193, 194의1, 597의37번지 제외)
	남촌동 남촌동 일원(논현동으로 편입된 남촌동 551의1-4번지 제외) 도림동에서 편입한 도림동 산103의1-2, 산104, 584의31, 584의37, 584의3-70, 594의24-33, 594의35, 594의37-43, 594의52-57, 594의59-66, 594의68-78, 596의3, 617의1, 620-623, 624의1-14, 625의1-42, 626의1-44, 627의1-3번지 포함 논현동에서 편입한 논현동 산94의1-2, 산94의4-5, 산94의10-11, 산95의2, 산96의1, 산97의3, 산102의1, 산103의13-14, 472의8-11, 474의1, 481의3, 524의1-6, 525의1-4, 526의1-32, 526의42-45, 527의1-3, 584의1번지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한 고잔동 597의69-72번지 포함
	논현동 논현동 일원(남촌동으로 편입된 논현동 산94의1-2, 산94의4-5, 산94의10-11, 산95의2, 산96의1, 산97의3, 산102의1, 산103의13-14, 472의8-11, 474의1, 481의3, 524의1-6, 525의1-4, 526의1-32, 526의42-45, 527의1-3, 548의1번지, 고잔동으로 편입된 논현동 383의25, 412의20-23, 415의57-58번지, 서창동으로 편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 도림동에서 편입한 도림동 산93의3, 산94의3, 산96의2-3, 산97의2-4, 산98, 산100, 산100의1-5, 산102, 산102의1-5, 산103의3, 498의4, 584의97-98, 594의20-23, 594의34, 594의36, 594의44-46, 594의48, 594의50-51, 594의79-80, 594의87-91, 595, 596의1-2, 597의3-5, 600의1, 601-607, 607의1-2, 620의1-2, 621의2, 626의9, 626의45-50, 627의28번지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한 고잔동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의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6의3, 622, 산72의2, 산77의1-4, 산80의3, 산97의3번지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한 고잔동 산72의2, 산77의1-4, 산97-3, 산80의3, 255의6,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의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6의3, 622번지,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고잔공원 제외) 및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포함 남촌동에서 편입한 남촌동 551의1-4번지 포함 도림동에서 편입한 도림동 552의1-41, 산105의1-21번지 포함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고잔동	고잔동 일원(남촌동으로 편입된 고잔동 597의69-72번지, 논현동으로 편입된 고잔동 산72의2, 산77의1-4, 산97-3, 산80의3, 255의6,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의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6의3, 622번지 제외)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고잔공원 제외) 및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제외) 논현동에서 편입한 논현동 383의25, 412의20-23, 415의57-58번지 포함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법정동 및 행정동의 경계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도 비용 미발생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최 민 영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쳐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74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석2동-구월2동」 경계 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 마련 및 주민의 생활권 일치 기여
- 동별 행정구역 현황의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통한 현행화로 주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행정자료 제공

□ 주요내용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석동 141의 29-30, 142-146번지 및 간석동 131의2 일부(도로), 141의1 일부(도로), 141의2 일부(도로)를 구월2동으로 편입함에 따라 관련 별표의 구역 현황 수정
 - 행정동(간석2동→구월2동) 변경
- 동별 관할구역 수정사항 전면 반영 : 별표 참고
 - 각 동별 관할 구역 현행화
 - 관할구역 전반의 표기 통일성 확보를 위한 표기 방식 정리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조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제2조 관련)

구 명	법정동	동장수	행 정 운영동	관 할 구 역
남동구	계	20	20	
남동구	구월동	4	구월1동	구월동 258, 260의5, 277-294, 300-301, 426-550, 577, 578의1-2, 580의1, 580의4-5, 580의8, 581-582, 583의4, 584-596, 688의2, 688의7, 688의16, 689-896, 1072, 1080, 1081의3, 1081의7-8, 1178-1240, 1328-1331, 1378-1483, 1487-1560, 1576-1601번지 일원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구월2동	구월동 3-4, 6-7, 12, 20-27, 29-30, 32-34, 52-59, 69-70, 73의3, 341-343, 1071-1072, 1241-1254, 1322번지 일원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원 (간석동에서 편입한 간석동 131의2 일부, 141의1 일부, 141의2 일부, 141의29-30, 142-146번지 일원 포함)
			구월3동	구월동 산62의8-9, 산84의7, 177, 180의4-31, 182의7-8, 201-203, 808-849, 862, 925, 1022, 1084, 1086-1177, 1333-1337, 1339-1433, 1437-1446, 1448-1476번지 일원
			구월4동	구월동 산1-9, 산16의1, 349, 361, 551, 557-575, 580의6-7, 583-584, 587, 597-688, 1068의28, 1255-1320, 1323-1325번지 일원
	간석동	4	간석1동	간석동 273, 275-277, 280-285, 292-294, 302-304, 307-343, 351-358, 397-399, 407-419, 427-470, 478-488, 491-495, 497-501, 503, 505, 508, 510, 512-521, 523, 532, 542-558, 731, 746의17, 748-749, 752, 755, 763, 899-909, 925-932번지 일원
			간석2동	간석동 8-11, 21-24, 27-31, 33-34, 39, 122-125, 129-130, 133-140, 141의1, 153-160, 163-176, 179-180, 182-195, 205-214, 913-914, 938번지 일원 (구월동으로 편입된 간석동 131의2 일부, 141의1 일부, 141의2 일부, 141의29-30, 142-146번지 일원 제외)
			간석3동	간석동 산1, 산3-4, 산6, 산9-10, 산14-23, 산26-28, 산30, 산34-36, 산86, 1-7, 12, 26, 37, 40-67, 69-121, 224-227, 735-736, 767번지 일원
			간석4동	간석동 177, 216-217, 220-222, 228-241, 243-257, 267-271, 359-362, 364-376, 378-384, 387-395, 524-537, 560-614, 616-617, 762, 893-896, 935, 939번지 일원

구 명	법정동	동장수	행 정 운영동	관 할 구 역
남동구	만수동	6	만수1동	만수동 346-353, 367-373, 422-424, 586-597, 808 의42-43, 927-937, 948-983, 995-999, 1003, 1005-1006, 1071-1072, 1106번지 일원
			만수2동	만수동 산1, 산21, 산32, 1-2, 3의1, 3의3-5, 5-6, 68, 71-74, 80, 109의15, 109의233, 109의328, 109의431, 109의438, 822, 867-874, 1115의1, 1116-1120번지 일원
			만수3동	만수동 산2-3, 산6, 산8, 80의604, 107, 109, 109의 1-14, 109의16-232, 109의234-327, 109의 329-332, 109의334-430, 109의432-437, 109의 439, 111, 116, 839-866, 988-989, 1114, 1115 의2번지 일원
			만수4동	만수동 3-4, 9-30, 32-33, 35-40 산42-44, 산54-55, 산68-69, 산71, 45-67, 69, 84-90, 101-102, 373 의1, 386의8, 389의8, 389의10, 391-393, 395-396, 409, 427-428, 431, 444의4, 873, 1113번지 일원
			만수5동	만수동 875-926, 938-947, 991-994번지 일원
			만수6동	만수동 산86-113, 289-291, 332-339, 600-811, 831-832, 984-987, 1008-1052, 1065-1070, 1073-1109번지 일원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1	장 수 서창동	장수동 일원, 운연동 일원 서창동 산1-19, 산29의1-16, 산30-52, 83의81-93, 159, 161의7-11, 178의1, 179, 179의1, 187, 187의1, 191-448, 454-469의24, 474-479, 484, 500의230, 504-520, 530의16, 533의2, 531-575, 584-626번지 일원
			서창2동	서창동 산29의45, 산30-47, 83의120-124, 85-158, 161의18-24, 167-177, 178의4-11, 179의7, 187 의3, 452-453, 469의25, 481-482, 500의 102-339, 501-503, 521-530, 576-583, 627-816 번지 일원
	도림동 수산동 남촌동 논현동	1	남 촌 도림동	도림동 일원, 수산동 일원, 남촌동 일원
			논현1동	논현동 산1-12, 산17-18, 산21-30, 1-30, 32-58, 60-64, 66-68, 70, 109-112, 322, 549, 577, 591-617, 651-682, 696-700, 720-721, 727-728, 731, 775의1-3, 810번지 일원
	논현동 고잔동	2	논현2동	논현동 산32-33, 산56-57, 산66, 산75-78, 산80-81, 산83-86, 산94, 산105, 313의5, 423, 427-440, 442-451, 453-454, 471, 473, 491, 505-507, 513, 543, 553-575, 578-590, 618-635, 643-648, 689, 702-708, 717번지 일원
			논 현 고잔동	논현동 산13-16, 산19-20, 179, 209, 264, 269-272, 359, 383, 409, 532, 649-650, 719, 732-774, 776-809번지 일원 고잔동 일원,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법정동 및 행정동의 경계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도 비용 미발생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최 민 영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쳐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75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소래역사관을 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유물평가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에서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조례 제18조(유물평가위원회) 제4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위치) 역사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5 (논현동 680-2)에 둔다.

제9조제2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에 따라 역사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역사관 관람료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범 위	비고
	개 인	단 체		
어 른	500원	300원	· 19세 이상 ~ 64세 이하	
청소년·군인	300원	200원	· 13세 이상 ~ 18세 이하 및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포함)	
어린이	200원	100원	· 6세 이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포함)	

- 1. 단체는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아동은 무료. 단, 단체관람시 어린이 단체요금을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9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보호자가 없는 만 6세 이하의 아동 3. ~ 6. (생략) 제18조(유물평가위원회)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조(위치) 역사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5 (논현동 680-2)에 둔다. 제9조(관람의 제한) ----- ----- -----. 1. (현행과 같음) 2. ----- 6세 ----- - 3. ~ 6. (현행과 같음) 제18조(유물평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에 따라 역사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래역사관 사무 위탁 시 유물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해 수탁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이 은 미

[참고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76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축제운영을 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축제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에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조례 제36조(축제위원회의 구성) 제5항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라 축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6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라 축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u>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축제 사무 위탁 시 위원회 구성에 관해 수탁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이 은 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77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현재 소래아트홀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관람시간, 매표수수료 조항 등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 명시 : (안 제1조)
- 아트홀의 설치 위치 명문화 : (안 제3조)
- 관람시간 조항 삭제 : (안 제4조제2항)
- 시설명칭 현실화 : (안 제7조)
- 매표·수표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 : (안 제15조)
- 매표수수료 관련 조항 삭제 : (안 제15조제2항,제3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동소래아트홀”을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로, “정하여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6조 앞에 “제3장 대관 및 사용”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관람”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5장 기타”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아트홀의 설치) 아트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437번길 32(논현동 767-4)에 둔다.

제3조 앞에 “제2장 운영”을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운영

제4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아트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공연시설에 한함)

제5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09: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4항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대관 및 사용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호 중 “대공연장, 소공연장(소강당), 전시실(갤러리)”을 “대공연장(소래극장), 소공연장(스튜디오 제비), 전시실(갤러리화·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야외공연장”을 “야외공연장(달맞이터)”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제7조”를 각각 “제8조”로 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관람

제15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관리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5조의2를 제16조의2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상적인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기타

제20조의2를 제21조의2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제10조 관련)**1. 사용시간**

구 분	시간(공연장)	비 고
오 전	09:00 ~ 12:00	※ 철야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한함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철 야	22:00 ~ 다음날 07:00	
전시실	09:00 ~ 22:00	

2. 사용료**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공연	대중음악/행사	비 고
대공연장 -627㎡ -703석	오전	100,000	150,000	무대 403㎡ (21m*14m)
	오후	140,000	190,000	
	야간	200,000	250,000	
소공연장 -277㎡ -196석	오전	30,000	50,000	소강당 서랍식객석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전시실(525㎡)	1일	㎡당 200	※ 무빙월 120m / 벽체 90m	

※ 비고

- 1) 공연대관은 평일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2) 공연대관의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사용시간 동안 2회 이상의 공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3)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4)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공연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 5)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철야대관은 매 3시간 단위로 야간사용료의 100%를 적용한다. 다만,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 6) 공연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풍물, 순수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을 말한다. 다만, 관람 대상이 한정되는 특정 단체의 공연이나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행사 대관료를 적용한다.
- 7)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 기본시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8) 냉방비 및 난방비는 1시간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모(㎡)	사용료	비 고
연습실1	93.0	50,000	○ 1회 기준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연습실2	62.8	30,000	
연습실3	50.4	30,000	
연습실4	16.0	20,000	
스튜디오(대)	57.7	30,000	
스튜디오(소)	29.6	20,000	
문화교실1, 2	72.3	40,000	
문화교실3	91.5	50,000	
회의실	108.9	50,000	
공연장로비	400.0	50,000	
야외공연장	50.0	30,000	
분장실1(주연)	18.2	10,000	
분장실2(여)	38.8	20,000	
분장실3(남)	32.8	20,000	

다.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녹 음	방송, CF, 영화촬영	비 고
대공연장	150,000	1,000,000	방송, CF, 영화촬영 : 8시간 기준 녹음 : 1회 4시간기준

※ 녹음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하고, 철야작업시는 사용료의 150%로 하며, 녹음의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50%로 한다.

라.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단 위	기 본 사용료	비 고
피아노	대공연장	고급	1일	6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 단위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무대	댄싱플로어(무용매트)		1일	100,000	
	샤 막		1일	100,000	
	덧 마 루	기본50㎡	1일	50,000	
		추가	1㎡	2,000	
음향	음향반사판		1일	50,000	
	음향콘솔	대공연장	1일	70,000	
		소공연장	1일	50,000	
	CD Player 포함		1일	70,000	
	메인스피커(1식)	대공연장	1일	70,000	
		소공연장	1일	50,000	
	앰프 포함	대공연장	1일	20,000	
		소공연장	1일	20,000	
	모니터스피커(개별)	대공연장	1일	2,000	
		소공연장	1일	2,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	대공연장	1일	10,000	
		소공연장	1일	10,000	
	스탠드 포함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20,000	
	유선마이크(콘덴서)	대공연장	1회	200,000	
		소공연장	1회	100,000	
조명	기 본	대공연장	1회	50,000	
		소공연장	1회	30,000	
	Console		1일	100,000	
	Follow spot		1회	30,000	
	Moving Light		1일/1대	30,000	
	Elipsoid Light		1일/1대	2,000	
	Strobe Light		1일/1대	3,000	
	Par 64		1일/1대	1,000	
	Par46(1세트 8대)		1일/1조	3,000	
	Bank(1세트 4구)		1일/1조	3,000	
	드라이아이스 기계		1일/1대	10,000	
	포그 기계(포그 기계액 포함)		1일/1대	30,000	
기타	의상 및 대.소도구		1일	취 득 가 액 의 5%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 기준 (제1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일반강좌	1인 1월	10,000원 ~ 100,000원	일반 소양강좌
전문강좌	1인 1월	100,000원 ~ 200,000원	전문성 특화강좌

[별표 3]

정기회원 가입비(제16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 분	회원기간	할인기준	가입비	비 고
일반회원	1년	1인 2매	10,000	※ 기간만료일은 도래시점(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가족회원	1년	1인 4매	20,0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남동소래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구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규정함-----.</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 제8조-----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설>	제3조(아트홀의 설치) 아트홀은 <u>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437번길 32(논현동 767-4)에 둔다.</u>
제2장 운영 <신설>	<삭제> 제2장 운영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아트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1.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공연시설에 한함)

2. 매주 월요일 (공연시설에 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② 아트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시간) 아트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1. ~ 3. (생략)

제5조(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트홀 운영을 제20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대관 및 사용

제5조(사용시간) -----

-- 09: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다음-----. 다만, 구청장이 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21조-----

-----.

<삭 제>

<신 설>

제6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사용자에게 시설 일부를 대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소강당), 전시실(갤러리)

2. 부속시설 : 스튜디오, 연습실, 야외공연장, 문화교실(세미나실), 회의실

3. (생략)

제7조·제8조 (생략)

제9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①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③ (생략)

④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 제12조 (생략)

제3장 대관 및 사용

제7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

-----.

1. ----- 대공연장(소래극장), 소공연장(스튜디오 제비), 전시실(갤러리 화·소)

2. -----
야외공연장(달맞이 터)-----

3. (현행과 같음)

제8조·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① 제8조-----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8조-----

-----.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4장 관람<신 설>제13조 (생 략)제14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수표는 아트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아트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 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 략)

2.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는 자

3. (생 략)

<삭 제>제4장 관람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제15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관리한다.

제16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65세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u>제15조의2</u> (생 략) <u>제16조</u>(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u>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자</u> 7. (생 략) <u>제17조</u> (생 략) <u>제5장 기타</u> <u><신 설></u> <u>제18조</u> ~ <u>제21조</u>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제16조의2</u> (현행 제15조의2와 같음) <u>제17조</u>(관람의 제한)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정상적인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u> 7. (현행과 같음) <u>제18조</u> (현행 제17조와 같음) <u><삭 제></u> <u>제5장 기타</u> <u>제19조</u> ~ <u>제22조</u> (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단순 상위법 근거 명시, 시설명칭 변경, 관람시간 및 매표수수료 관련 조항 현실화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이 은 미

[참고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78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권리와 보호·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기반 마련

☐ 주요내용

- 피해학생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조항 신설 : (안 제4조)
-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조항 신설 : (안 제5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 :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제10조의2,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를 “이란 학교”로,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을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남동구(이하 “구””를 “남동구(이하 “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교육장(이하“교육장””을 “교육장(이하 “교육장””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제6조로 하며,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피해학생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남동구 구민은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알리도록 노력한다.

제5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6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학생을 보호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8조에 따른 남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생 및 학부모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7조”를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능은「남동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를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3. 남동구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제10조(종전의 제7조) 전단 중 “다른위촉”을 “위촉”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 제2항 본문 중 “년”을 “연”으로, “임시회는”을 “임시회의는”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 중 “대하여「인천광역시 남동구 포상 조례」”를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학교폭력”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이 ^라 학교 ----- ----- -----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 ----- ----- ----- -----.
2.“학교”란 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남동구(이하 “구”----- ----- ----- -----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 ----- 교

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육장(이하 “교육장”-----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피해학생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
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구청장
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
다.

② 남동구 구민은 누구든지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알리도록 노력
한다.

제5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6항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 및 지원할 수 있으
며,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
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
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
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8조에 따른
남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생 및 학부모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
한 홍보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
책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 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4. (생략)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생략)

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2. (생략)

3. 인천남동경찰서 경찰 공무원

4. ~ 8. (생략)

③ (생략)

④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남동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② -----
--- 심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남동구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능은「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

-----.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생 략)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
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0조, 제11조 (생 략)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에
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

----- 위촉 -----

----- 한다. -----

-----.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2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연 -----

----- 임시회의는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 제14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5조(포상) -----

----- 대하여 -----

「남동구 표창 조례」-----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참고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제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의 의원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의안 번호	2779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 위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현 수탁법인	비고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남동구 용천로 208, 2층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661.16㎡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

※ 위탁계약 기간은 2021. 1. 1. ~ 2025. 12. 31.이었으나, 수탁자의 위탁 해지 희망에 따라 위탁운영자 재선정 필요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위탁기간, 위탁시설 및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위탁조건 및 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 1,869,053천원(5년)(시비 50%, 구비 50%)

☐ 보고사항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보고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위치도 등



☐ 참고 자료

- 붙임1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붙임2 :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문(안) 1부.
- 붙임3 : 관련법령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년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 인건비(종사자 호봉승급)는 연간 인상률(2%) 적용 추산
 - 운영비는 2023년도 지원기준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3년 ~ 2027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발생비용 : 1,869,053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보조금 950,027천원, 구비 919,026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아동복지과장 김 종 수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83,975	186,931	189,945	193,020	196,156	950,027
시비보조금		183,975	186,931	189,945	193,020	196,156	950,027
세 출		361,749	367,661	373,690	379,840	386,113	1,869,053
아동복지종합센터 지원		361,749	367,661	373,690	379,840	386,113	1,869,053
재원 조달		361,749	367,661	373,690	379,840	386,113	1,869,053
의존 재원	소 계	183,975	186,931	189,945	193,020	196,156	950,027
	보 조 금	-	-	-	-	-	-
	국비	-	-	-	-	-	-
	시비	183,975	186,931	189,945	193,020	196,156	950,027
	지방 교부세	-	-	-	-	-	-
	조정 교부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77,774	180,731	183,745	186,820	189,956	919,026
	구 비	177,774	180,731	183,745	186,820	189,956	919,026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아동복지종합센터 인건비 지원액 산정

- 「2023년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적용
-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률 2% 적용 추산

비용 세부 추계표(2023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안내 기준)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인건비(종사자 5명), 운영비		361,749
종사자 인건비	[월급여] 207,940천원 - 시설장:5,154,800원×1명×12월 - 과장:4,012,700원×1명×12월 - 사회복지사:3,178,100원×1명×12월 - 사회복지사:2,751,000원×1명×12월 - 임상심리상담원:2,231,700원×1명×12월 [제수당] 40,740천원 -가족수당 3,360천원 -명절휴가비 20,570천원 -연장근로수당 12,610천원 -정액급식비 50천원×5명×12월=3,000천원 -관리자수당 100천원×1명×12월=1,200천원 [4대보험] 24,727천원 [퇴직적립금] 26,442천원 [복리후생비] 1,900천원 -복지포인트 1,400천원 -건강검진비 500천원	- 시설장:1명 (31호봉) - 과장:1명 (21호봉) - 사회복지사:2명 (14호봉, 8호봉) - 임상심리상담원:1명 (3호봉)	301,749
운영비	[운영비] 60,000천원 -15,000천원×4분기=60,000천원		60,000

[참고자료1]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민간 위탁하여 운영중인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의 수탁자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아동 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II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운영자 선정
-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위탁개요

1 시설현황

- 시설명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2008.8.14.설치)
- 소재지 : 남동구 용천로 208, 2층(간석동, 인천시사회복지회관)
- 주요사업 : 아동상담 및 치료사업 등 아동복지 증진 사업

○ 규 모 : 661.16m²(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계	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대기실	사무실	주방	기타)
661.16m ²	129.36m ²	36.56m ²	64.49m ²	150m ²	51m ²	24m ²	205.75m ²

○ 종사자수 : 5명(센터장, 과장, 사회복지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 예산지원 : 361,749천원(인건비 및 운영비, 시비 50%, 구비50%)

○ 現 위탁법인 :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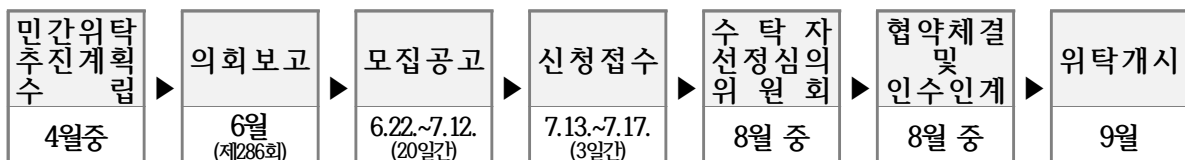
○ 그간 위탁현황

구분	위탁기간	위탁방식	위탁법인	비고
1차	2008.8.1.~2011.7.31. (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차	2011.8.1.~2014.7.31. (3년)	재계약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3차	2014.8.1.~2017.12.31. (3년5월)	공개모집	사단법인 웰브	
4차	2018.1.1.~2022.12.31. (5년)	공개모집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인천광역시협의회	수탁자 해지 요청에 따라 2020.12.31.까지 위탁
5차	2021.1.1.~2025.12.31. (5년)	공개모집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자 해지 요청에 따라 2023.8.31.까지 위탁(예정)

②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2023.9.1.~2028.8.31.예정)

③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선정

④ 위탁절차 ※ 모집 재공고시 일정 변경



IV

세부추진계획

① 민간 위탁 의회 보고

○ (근 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시 기) 제286회 남동구의의회 정례회 (2023. 6. 7. ~ 6. 21.)

②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2023. 6. 22.(목) ~ 7. 12.(수) (20일간)

○ (접수기간) 2023. 7. 13.(목) ~ 7. 17.(월) (3일간)

○ (접수장소) 남동구 평생학습관 4층 아동복지과 아이돌봄팀

○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 **단독 신청 시 1회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1개 법인이 신청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단, 심의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할 경우에도 재공고함.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규정)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 포함

▸ 모집결과 신청기관 없을시 신청자격을 전국 법인으로 확대 예정

- 보조금 지원 외에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신청시 **운영보조금의 일부에 대한 자부담률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

※ 법령 위반으로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위탁 취소·해지 법인 신청 불가

○ (시설장의 자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15]에 따른 종사자 자격 기준

직종별	자 격 기 준
아동 복지 시설 의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및 심의

○ (구성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위원회 구성) 7인(위원장 포함)

구 분		인 원	선 정 기 준	비 고
계		7명		
위원장	공 무 원	1명	부구청장	당 연 직
위 원	공 무 원	2명	복지국장, 아동복지과장	당 연 직
	아동복지전문가	4명	사회복지시설장 및 민간 전문가	위 촉 직

※ 간사 : 1명(아이돌봄팀장)

※ 수탁 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 심의위원 추천 의뢰(비공개)

- 추천의뢰 : 아동복지단체, 아동복지 전문가 등 심사위원 추천의뢰
- 추천기한 : 2023. 7. 21.(금)까지
- 【붙임2】승낙 및 서약서 취합 후 심의위원 구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3. 8월 중 (일정 추후협의 결정)
- 심의내용 : 심의기준(안) 결정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심의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에 따라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평가
- 심의절차

① 선정심의 방법안내	•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설명 ⇒ 간사
-------------	-----------------------



② 선정방법 및 심사표 결정	• 참석위원 협의하에 선정방법, 심사기준 및 배점표 결정 ⇒ 위원 모두
-----------------	---



③ 사업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접수순)	• 법인대표 또는 센터장 예정자로부터 사업계획 및 센터 운영 의지 등 발표 청취(10분 이내) • 법인대표 또는 센터장 예정자에게 사업 비전제시 등 위원 질의응답 실시(10분 이내) ⇒ 위원 모두
-----------------------	--



④ 채점 실시	• 심사기준표에 의거 신청법인별 채점 및 합산 ⇒ 위원 모두
---------	-----------------------------------



⑤ 채점결과 검산.확인	• 심의위원 개인별 채점표 검산 및 확인 ⇒ 간사
--------------	-----------------------------



⑥ 심사의결서 서명	• 최종 집계된 심사결과 위원 모두 서명확인 ⇒ 위원 모두
------------	----------------------------------



⑦ 선정법인 발표	• 선정법인 발표 ⇒ 위원장
-----------	-----------------

- 참석수당 : 100천원 범위 내 (1인 기준 / 공무원 제외)

참석수당	기본(2시간)	추 가	비 고
지급액	70,000원	30,000원	초과는 1일1회만 지급

○ 선정항목 및 비율(안) 【붙임3】

구 분	계	법 인 신 의 력	재 정 능 력	운 영 능 력	책 임 자 성	사 업 수 행 력
배 점	100점	10점	15점	20점	20점	35점

※ 세부심사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심의기준별 항목간 배점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감점(최대5점) : 비위사실(행정처분) 있을 경우

○ 선정 방법(안)

- 작성된 신청법인의 심의자료를 심의위원이 검토
- 심사 시작 前에 심사기준 및 배점표, 선정방법 등 심의 및 결정
- 심의위원별로 심사기준 및 배점표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채점 실시
- 심의위원 각자가 채점표에 신청 법인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을 개인별로 합산
- 1개의 법인에 개인별로 부여한 심의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나머지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법인 선정(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신청법인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포기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여부 결정

4] 선정결과 안내 및 위탁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위탁계약 체결 : 2023. 8월중【불임7】

V

향후일정(안)

- 민간위탁(재위탁) 의회 보고 : 2023. 6월중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6. 22.(목) ~ 7. 17.(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3. 8월중
- 위탁운영 협약체결 : 2023. 8월중
- 위탁 개시 : 2023. 9. 1.(금) 예정

[참고자료2]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소재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6. .

남 동 구 청 장

1. 명 칭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층(간석동, 사회복지회관)
3. 위탁사무
 - 지역아동 및 가족의 상담, 치료, 예방사업
 - 지역아동의 보육과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지원사업
 - 기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2023. 9. 1. ~ 2028. 8. 31. 예정)
5. 위탁관리 규모

계	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대기실	사무실	주 방	기 타 ²⁾
661.16㎡	129.36㎡	36.56㎡	64.49㎡	150㎡	51㎡	24㎡	205.75㎡

※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은 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6. 위탁법인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규정)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 포함

7. 제외대상

- 법령위반으로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위탁 취소 또는 해지된 법인은 신청불가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시설장의 자격 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15])

직종별	자 격 기 준
아동 복지 시설 의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위탁조건

- 수탁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시설장 제외)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 이행
- 인천시와 남동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자부담하여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기타 지침 준수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협약서에 의함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시설 공간 및 장비를 타 목적으로 사용금지
- 향후 사회복지회관 이전계획에 따른 전체시설 이전상황 발생시 시설 무상사용 불가

10. 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3. 6. 22.(목) ~ 7. 12.(수)(20일간)
- 접수기간 : 2023. 7. 13.(목) ~ 7. 17.(월) 18:00까지(3일간)
- 접수장소 : 남동구청 아동복지과 아이돌봄팀(남동구평생학습관 4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원본 1부, 사본 10부)

가. 신청서(소정양식) : 1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11부

다. 법인정관 : 11부

라. 법인일반현황 : 11부

마. 법인재산현황 : 11부

바. 사업실적 및 법인결산서(2020년 ~ 2022년) : 11부

사. 연도별 자부담출연계획서 : 11부

아. 자부담 재정능력 확보 증명서류(법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 11부

자. 시설운영·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 11부

차. 조직(기구표), 종사자 승계 및 확보계획 : 11부

카. 법인대표 이력서 : 11부

타. 시설장 예정자 현황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 11부

파.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통보서 사본 (지도·감독부서, 감사부서) : 11부

하.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 11부

※ 위 순서(가~하)에 따라 1권으로 제본(A4규격, 페이지번호 부여) 11부 제출

※ 신청서 및 입증서류는 관련기관의 증명서 원본으로 1부씩 제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회의시 발표할 자료(종이문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5일前까지 제출(※ ppt 등은 접수하지 않음)

11. 심사 및 선정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법인의 공신력 : 설립목적, 목적사업

- 재정능력 : 자부담 지원계획, 자산 보유현황

- 운영능력 : 법인사무실, 인력,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과거 3년간 기여도

- 책임자 적정성 : 법인대표 및 센터장예정자 자격증/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운영의지

- 사업수행능력 : 종사자 인적활용 및 역량강화, 사업계획 실현성 및 타당성, 지역사회네트워크 및 특수성 반영, 프로그램 적정성

- 비위사실 여부 : 행정고발, 행정처분 여부 확인후 있을시 감점 처리

※ 항목별 배점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

○ 신청법인별 사업계획을 10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발표 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 모집결과 1개 기관 신청 시 재모집 공고

12. 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 : 심사당일

- 방 법 : 남동구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된 법인에게 개별통지

13. 협약체결

- 기 간 : 2023. 8월중
- 장 소 : 남동구 아동복지과

※ 선정된 법인이 협약체결 기한 내 체결하지 않을시 차 순위자와 협약 체결

14.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변경·추가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선정을 취소함
- 현장 설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前에 신청안내문과 위탁시설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협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취소와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 할 수 있음
- 공모와 관련된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구의 해석에 따름
- 선정된 법인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신청서식은 남동구청 홈페이지(www.namdong.go.kr)의 [바탕화면]-[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아동복지과(☎032-453-5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참고자료3]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780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2023년도 하반기 위탁계약만료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6개소)
○ 위탁시설

(2023. 4. 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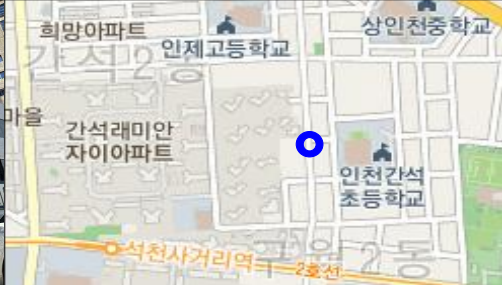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설치(개원)일	위탁기간
[신규] 한화포레나 (가칭)	용천로105번길 19 일원 (구월2동, 한화포레나) ※2023.11월 준공 예정	527.63㎡ (지상1층)	최대 85명 (-)	24. 4월 개원예정	'24.01.01. ~ '28.12.31.
서창나무	서창남로 2, 관리동 (서창2동, 인천서창NH12단지)	598.26㎡ (지상2층)	101명 (33명)	14.12.15.	'23.10.01. ~'28.09.31.
서창 푸르른	서창남순환로 55, 관리동 (서창2동, 센트럴푸르지오)	345.36㎡ (지상1층)	65명 (55명)	18.11.19.	'23.11.19. ~'28.11.18.
구월 한별	선수촌로 75, 관리동 (구월1동, 유승한내들퍼스티지)	240.14㎡ (지상1층)	37명 (32명)	18.12.01.	'23.12.01. ~'28.11.30.
푸른숲	서판로59번길 3 (만수3동)	407.4㎡ (지상3층,지 하1층)	48명 (30명)	11.01.01.	'24.01.01. ~'28.12.31.
해마루	앵고개로815번길 22 (논현고잔동, 소래휴먼시아3단지)	255㎡ (지상1층)	48명 (34명)	11.01.01.	'24.01.01. ~'28.12.31.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
 - 어린이집 운영(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관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
- 소요예산 : 18,179,023천원(5년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위치도 등

한화 포레나		
서창 나무		
서창 푸르른		

구월 한별		
푸른숲		
해마루		

□ 참고 자료

- 참고1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 1부.
- 참고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 참고3 : 관련법령(발췌)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6개소)에 따른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년 보육사업안내
 - 인건비 및 보육료는 연간 인상률(3%) 적용 추산
 - 운영지원비는 2023년도 지원기준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4년 ~ 2028년
- 비용추계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 비용추계의 가정
 - [신규]한화포레나 : 국공립 정원충족률(71%)에 따라 정원85명, 현원 60명으로 가정하여 국공립 평균 연령별 아동 비율에 따른 아동·반·보육교직원 구성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년 ~ 2028년(5년)
- 발생비용 : 18,179,023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15,829,929천원, 구비 2,349,094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3,010,784	3,089,865	3,171,319	3,255,215	3,302,746	15,829,929
국시비보조금		3,010,784	3,089,865	3,171,319	3,255,215	3,302,746	15,829,929
세 출		3,455,604	3,543,043	3,633,104	3,725,865	3,821,407	18,179,02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3,455,604	3,543,043	3,633,104	3,725,865	3,821,407	18,179,023
재원 조달		3,455,604	3,543,043	3,633,104	3,725,865	3,821,407	18,179,023
의존 재원	소 계	3,010,784	3,089,865	3,171,319	3,255,215	3,302,746	15,829,929
	보 조 금						
	국비	1,856,215	1,908,115	1,961,573	2,016,634	2,073,346	9,815,883
	시비	1,154,569	1,181,750	1,209,746	1,238,581	1,229,400	6,014,046
	지방 교부세						
자체 수입	조정 교부금						
	소 계	444,820	453,178	461,785	470,650	518,661	2,349,094
구 비	구 비	444,820	453,178	461,785	470,650	518,661	2,349,094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 산정
-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현재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직위별 평균 호봉 기준으로 승급에 따른
인상률(3%) 적용 추산

[참고자료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신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2023년 하반기 위탁계약 만료·해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II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체 선정
-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의 객관적 절차 이행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개요

- 위탁대상시설

(2023. 4. 30. 기준)

명칭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위탁현황		비고
			정원	현원	위탁체	위탁기간	
[신규] 한화 포레나 (가칭)	용천로105번길 19 일원 (구월2동, 한화포레나) ※2023.11월 준공 예정	527.63㎡ (지상1층)	최대 85명	-	-	-	24.4월 개원예정
서창 나무	서창남로 2, 관리동 (서창2동, 인천서창LH12단지)	598.26㎡ (지상2층)	101명	33명	엄현옥	2019.12.15. ~2023.7.31.	사임원에 의한 계약해지

명칭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위탁현황		비고
			정원	현원	위탁체	위탁기간	
서창푸르른	서창남순환로 55, 관리동 (서창2동, 센트럴푸르지오)	345.36㎡ (지상1층)	65명	55명	문정애	2018.11.19. ~2023.11.18.	
구월한별	선수촌로 75, 관리동 (구월1동, 유승한내들퍼스티지)	240.14㎡ (지상1층)	37명	32명	김선영	2018.12.1. ~2023.11.30.	
푸른숲	서판로59번길 3 (만수3동)	407.4㎡ (지상3층, 지하1층)	48명	30명	전선경	2019.1.1. ~2023.12.31.	
해마루	앵고개로815번길 22 (논현고잔동, 소래휴먼시아3단지)	255㎡ (지상1층)	48명	34명	박유미	2019.1.1. ~2023.12.31.	

○ 위탁(예정)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한화포레나 : '24. 01. 01. ~ '28. 12. 31.

- 서 창 나 무 : '23. 10. 01. ~ '28. 09. 31.

※ 신규 위탁체 위·수탁 계약 개시 전까지 대체원장 선정 예정

- 서창푸르른 : '23. 11. 19. ~ '28. 11. 18.

- 구 월 한 별 : '23. 12. 01. ~ '28. 11. 30.

- 푸 른 숲 : '24. 01. 01. ~ '28. 12. 31.

- 해 마 루 : '24. 01. 01. ~ '28. 12. 31.

○ 위탁체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체 선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IV 세부 추진계획

위탁체 공개모집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 한화포레나 / 서창나무 / 서창푸르른 / 구월한별 : 2023. 8월 중 (20일 이상)

- 푸른숲 / 해마루 : 2023. 9월 중 (20일 이상)

○ 공고내용 :【붙임1】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참조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한화포레나 / 서창나무 / 서창푸르른 / 구월한별 : 2023. 8월 중 (7일 이상)
 - 푸른숲 / 해마루 : 2023. 9월 중 (7일 이상)
- 접수방법 : 신청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제출서류 :【붙임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3. 위탁제 신청자격

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가.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4. 신청 제외대상

※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 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 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

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위탁체 선정 심사

1. 위탁체 선정 심사원칙 및 기준

-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보건복지부)」을 준용하되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붙임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안전관리능력,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평가(인증)제 결과,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계	100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2.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체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V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동의절차 이행: '23. 6월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한화포레나 / 서창나무 / 서창푸르른 / 구월한별 : '23. 8월 중
- 푸른숲 / 해마루 : '23. 9월 중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한화포레나 / 서창나무 / 서창푸르른 / 구월한별 : '23. 9월 중
 - 푸른숲 / 해마루 : '23. 10월 중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한화포레나 / 서창나무 / 서창푸르른 / 구월한별 : '23. 10월 중
 - 푸른숲 / 해마루 : '23. 11월 중

- 붙임 1.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2부.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1부.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참고자료2]

남동구 공고 제2023 - 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 9월 1일

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인가일	비고
한화 포레나 (가칭)	용천로105번길 19 일원 (구월2동, 한화포레나)	527.63㎡ (지상1층)	최대 85명	-	[신규] 24.4월 개원 예정. 8월 공고
서창 나무	서창남로 2, 관리동 (서창2동, 인천서창LH12단지)	598.26㎡ (지상2층)	101명	2014.12.15.	8월 공고
서창 푸르른	서창남순환로 55, 관리동 (서창2동, 센트럴푸르지오)	345.36㎡ (지상1층)	65명	2018.11.19.	8월 공고
구월 한별	선수촌로 75 , 관리동 (구월1동, 유승한내들퍼스티지)	240.14㎡ (지상1층)	37명	2018.12.1.	8월 공고
푸른숲	서판로59번길 3 (만수3동)	407.4㎡ (지상3층, 지하1층)	48명	2011.1.1.	9월 공고
해마루	앵고개로815번길 22 (논현고잔동, 소래휴먼시아3단지)	255㎡ (지상1층)	48명	2011.1.1.	9월 공고

2. 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한화포레나 : '24. 01. 01. ~ '28. 12. 31.
- 서 창 나 무 : '23. 10. 01. ~ '28. 09. 31.
- 서창푸르른 : '23. 11. 19. ~ '28. 11. 18
- 구 월 한 별 : '23. 12. 01. ~ '28. 11. 30.
- 푸 른 숲 : '24. 01. 01. ~ '28. 12. 31.
- 해 마 루 : '24. 01. 01. ~ '28. 12. 31.

※ 한화포레나 어린이집의 위탁개시일은 시설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 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3. 8. 1. ~ 8. 21. (한화포레나,서창나무,서창푸르른,구월한별)
2023. 9. 1. ~ 9. 21. (푸른숲, 해마루)
- 접수기간 : 2023. 8. 14. ~ 8. 21. (한화포레나,서창나무,서창푸르른,구월한별)
2023. 9. 14. ~ 9. 21. (푸른숲, 해마루)
- 접수장소 : 남동구청 6층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인 방문 접수(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 우편·인터넷·대리 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총 17부 (원본 1부, 사본 16부)
 -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약 5분 분량)

4. 신청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 및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나. 법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 ※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체 심의·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공신력(도덕적·법적)	10
■ 재정능력	5
계	100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를 준용하되,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은 일부 조정 가능

8.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신청·접수순으로 운영계획 등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 법인 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지참)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신청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이하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체는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위탁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한다.

※ 보험가입금액은 어린이집 연간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 위탁체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체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순위 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 제출
 - 위탁운영 조건 등 관련 사항 미숙지 또는 제출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 발표 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위탁체가 어린이집의 교직원(고용원장 포함)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2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 (※ 단, 현재 위탁대상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경우 제외)
 - (※ 단, 신규 설치 어린이집은 위탁개시일 하루 전까지 사임하되, 위탁체 선정 후부터 위탁개시일까지의 기간에도 설계용역 등에 참여해야 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보육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름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032-453-5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3]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81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칭 현행화 : (안 제12조)
- 국민권익위원회 「층간소음 갈등 해소 방안」반영 : (안 제6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조 내지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를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주택법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제2항제1호”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동주택법관리법 시행령」(이하”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로, “한다)제87조제2항”을 “한다)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공 동 주 택 명		관리사무소 연 락 처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피신청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신청의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남동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남동구 ----- -----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동구 --- ----- ----- -----.
1. 「공동주택법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에서 정한 사항 (전부개정 2017. 5. 10.)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 -----
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법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	②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

령”이라 한다)제8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⑤ (생략)

제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한다) 제87조제2항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30일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

-----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도시국 공동주택과장 송 수 영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요약)

의안번호 제2022 - 738호

의 안 명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대상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2. 10. 4.

주 문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 조치사항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 단축,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 유도

※ 특히,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이름, 연락처)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변경 또는 기재요령으로 안내

⇒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심의회·협의회·협업체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실·과·소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예산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782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서에 대하여 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5건), 기금(7종)
○ 세입·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서 및 첨부서류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사업비 (D)	보조금반납금 (E)	순세계잉여금 (F=C-D-E)
계	1,283,493	1,083,216	200,277	85,454	17,909	96,914
일반회계	1,254,291	1,069,793	184,498	79,359	17,775	87,364
특별회계	29,202	13,423	15,779	6,095	134	9,550

- 기금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2021년도 말 조성액(A)	2022년도 증감액(B)			2022년도 말 조성액(A + B)
	계	조 성 액	사 용 액	
40,376	85	2,406	2,321	40,461

- 재무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A)	총부채 (B)	순자산 (C=A-B)	총수익 (D)	총비용 (E)	운영차액 (F=E-D)
2,988,924	48,422	2,940,502	1,108,036	1,032,357	(75,679)

3. 참고사항

- 결산검사 기간 : 2023. 4. 5. ~ 2023. 4. 24.(20일간)
- 결산검사 위원 : 박정하 대표위원, 이봉훈 위원, 신혜철 위원, 김석주 위원, 이홍재 위원

4. 붙임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서
-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2783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6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I.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II. 주요내용

- 2022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예산액 ----- 10,911,501,000원
-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1건)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총무과) -- 93,290,000원

III.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4항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결정일자)	지출금액 (지출일자)	사 유
합 계	93,290,000	93,290,000	총무과 1건 예비비 지출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93,290,000 (2022.5.11.)	93,290,000 (2022.5.13.)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관련하여 남동구 선관위의 증액분 납부요청에 따라 예비비 지출 - 공직선거법 및 선거경비 산출기준 개정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증액분 납부요청 (선관위-2312 / 2022.04.22.) - 선거관리경비 증액분 납부요청에 따라 예비비 지출결정 (기획예산과-7015 / 2022.05.11.) - 코로나19 관련 투표관리 보완(참관인 수당 및 종사자 사례금 인상 등)을 위해 예비비 지출(남동구→선관위) (총무과-20005/2022.05.13.) ※ 선관위 선거관리경비 정산후 집행잔액 반납(2022.08.3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073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69호선】 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3. 5. 26.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운연동 중로3-69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L=900m, B=12m, A=19,117m²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9-10번지 일원
5. 보상시기 : 2023년 7월 중(예정)
6. 보상금 지급처 : 남동구청 도로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보상대상 없음.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일부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열람기간 : 2023. 5. 26. ~ 2023. 6. 12.
10. 기타사항
 -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도로과에 문의(☎032-453-2713)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목록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상 면적	편입면적		소계	잔여면 적	소 유 자			관계자			비고
					도로 내	도로 외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운연동	276	대	49	49	-	49	-	남동 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	-	-	-	-
2	운연동	276-1	대	60	60	-	60	-	남동 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	-	-	-	-

□ 지장물 목록

조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용도)	구조/규격	전체 수량	편입수량	단 위	물 건 소 유 자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운연동 276, 276-1	가옥	슬레이트 및 벽돌	76	76	m ²	도*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	-	-	-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6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26.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98 (고잔동)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 14 (서창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98 (고잔동)	2009.11.16.	은봉로와 청능대로 가운데 위치하여 각 도로명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제명	2023.05.2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청로 98 기초구간에위치하여98을 건물번호로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 14 (서창동)	2023.05.26.	건물멸실	